

한국에 거주하는 피폭자 여러분께

— 한국에서의 수당 및 장례비 신청 절차에 대하여 —

2005년 11월 30일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피폭자(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 받으신 분) 분들은 일본에 오시지 않아도 한국에서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폭자가 사망하셨을 경우의 장례비 신청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이 되는 수당

건강관리수당, 보건의수당, 의료특별수당, 특별수당, 원자폭탄소두증수당 및 장례비를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례비는 과거 5년 사이에 일본 국외에서 사망하셨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접수

거주 지역에 설치된 일본정부의 영사관(영사관이 없을 경우에는 대사관. 이하 '영사관 등'이라고 함)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시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청자 본인이 영사관 등에 직접 수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3.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페이지 이후에 수당과 장례비의 종류별로 기재해 놓았으므로,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 심사 및 심사 결과의 통지

접수된 신청 서류는 영사관 등에서 본인 확인과 필요 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피폭자건강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히로시마 시장이나 나가사키 시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송부됩니다. 그리고 서류를 받은 히로시마시, 나가사키시 또는 도도부현에서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심사를 하고, 그 결과는 시장 또는 도도부현의 지사로부터 신청자에게 직접 통지됩니다.

5. 수당 및 장례비 지급

지급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로부터 신청자에게 신청한 수당 또는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지급요건이 해소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6. 문의

불분명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거주 지역에 설치된 영사관 등, 히로시마시, 나가사키시 또는 도도부현으로 문의하십시오.

목차

1. 수당 등의 종류와 지급요건	1
2. 건강관리수당	2
3. 보건수당	6
4. 의료특별수당	11
5. 특별수당	15
6. 원자폭탄소두증수당	18
7. 장례비	21
8.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분에 관한 신고 등	24
(1) <u>현황 신고(중요)</u>	24
(2) 사망신고	24
(3) 성명, 거주지 변경에 대한 신고	24
(4) 수첩의 재교부	25
(5) 히로시마시, 나가사키시 및 각 도도부현의 문의처 일람	26

별첨 1 국가 또는 지역별 의료기관 목록

별첨 2 신청 서류 및 의료기관 조사표 양식

1. 수당 등의 종류와 지급요건

수당 등의 종류	지급요건	
건강관리수당 33,900 엔(월)	순환기기능 장애, 운동기기능 장애, 뇌혈관 장애, 조혈기능 장애, 간기능 장애 등 11 가지에 해당하는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에 걸려 있는 분	
보건수당 ①17,000 엔(월) ②33,900 엔(월)	2킬로미터 이내에서 직접 피폭한 분과 당시 그분의 태아였던 분	① 하기 이외의 분
		② 원자폭탄 상해작용의 영향으로 인한 신체상 장애가 있는 분, 또는 70 세 이상으로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가 아무도 없이 혼자 사시는 분
의료특별수당 137,840 엔(월)	원자폭탄 방사능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나 부상 상태에 있다고 일본후생노동대신의 인정을 받은 분으로,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아직 치료되지 않은 분	
특별수당 50,900 엔(월)	원자폭탄 방사능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나 부상 상태에 있다고 일본후생노동대신의 인정을 받은 분으로, 현재는 그 질병이나 부상이 치유된 분	
원자폭탄소두증수당 47,440 엔(월)	원자폭탄 방사능이 원인이 되어 소두증 상태에 있는 분	
장례비 193,000 엔	피폭자가 사망하여 그 장례를 치를(치른) 분	

※ 수당 등의 금액은 2005년 4월 현재의 금액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건강관리수당

(1) 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 분

건강관리수당은 피폭자로서 다음 ①~⑪에 해당하는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원자폭탄 방사능의 영향으로 인한 장애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를 제외함)에 걸려 있는 분에게 지급됩니다.

※ 보건수당, 의료특별수당, 특별수당 및 원자폭탄소두증수당과 병행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의 종류	대상 질병
① 조혈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	주요 질병은 재생불량성 빈혈, 철결핍성 빈혈입니다.
② 간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	주요 질병은 간경변입니다.
③ 세포증식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	주요 질병은 악성 신생물입니다.
④ 내분비선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	주요 질병은 당뇨병, 갑상선기능저하증, 갑상선기능항진증입니다.
⑤ 뇌혈관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	주요 질병은 거미막하 출혈, 뇌출혈, 뇌경색입니다.
⑥ 순환기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	주요 질병은 고혈압성 심질환, 만성 허혈성 심질환입니다.
⑦ 신장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	주요 질병은 네프로제 증후군, 만성 신염, 만성 신부전, 만성 사구체신염입니다.
⑧ 수정체 혼탁에 의한 시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	백내장입니다.
⑨ 호흡기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	주요 질병은 폐기종, 만성 간질성 폐렴, 폐선유증입니다.
⑩ 운동기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	주요 질병은 변형성 관절증, 변형성 척추증입니다.
⑪ 궤양에 의한 소화기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	주요 질병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입니다.

(2) 수당액

월 33,900 엔(2005년 4월 현재)

※ 수당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절차·신고 등

①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별첨 2(1~2 페이지))에 장애를 수반하는 질병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등(후기 (4) 참조)을 첨부하여 거주 지역에 설치된 영사관 등에 직접 신청하십시오.

※ 이미 건강관리수당을 지급 받고 계신 분은 중복해서 건강관리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의사의 진단서는 신청일 전 1 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 진단서 양식(별첨 2(7~8 페이지))의 기입상의 주의사항에 따라서 기입한 것을 제출하십시오..

③ 별첨 1 은 수당 신청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목록이므로, 이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을 것을 권합니다.

이 목록에 없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조사표(별첨 2(19~20 페이지))를 진단 받는 의료기관에 지참해서 의사에게 필요한 사항을 기입해 달라고 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④ 신청 서류를 거주 지역에 설치된 영사관 등에 제출하시면, 본인 확인과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영사관 등에서 히로시마시, 나가사키시 또는 도도부현으로 서류가 송부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 본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나 확인 절차는 아주 중요하므로, 정확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⑤ 심사 결과 수당 지급이 인정되면 신청자 본인에게 건강관리수당증서가 송부됩니다.

또, 심사 결과 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취지가 신청자 본인에게 통지됩니다.

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는 수 개월이 걸립니다.

<성명이나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⑥ 피폭자건강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변경된 사실이나 일본 국외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당신청서와 함께 변경 신고서(별첨 2(16~17 페이지))를 제출하십시오.

<건강관리수당의 지급기간>

- ⑦ 수당 지급이 인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히로시마 시장, 나가사키 시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인정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의 지급기간은 송부되는 건강관리수당증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관리수당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급기간 전이라 하더라도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그 날이 속한 달까지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 ⑧ 수당 지급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질병이 계속될 경우에는 지급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거주 지역에 설치된 영사관 등에 다시 신청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 인정을 받으면 계속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수당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급기간이 'OOOO년 OO 월부터 종신'으로 기재되어 있는 분의 경우는 이와 같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건강관리수당의 지급요건이 해소되었을 경우의 신고(중요)>

- ⑨ 수당 지급기간 내에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수당을 신청한 시 또는 도도부현으로 연락하여 필요한 신고를 하십시오.
질병이 치유된 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익월 이후에도 수당을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당의 지급기간 내에 사망하신 분의 장례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신고서가 필요하므로(22 페이지(4)의 ⑤ 참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분의 현황 신고(중요)>

- ⑩ 매년 5월 1일부터 동월 31일 사이에 성명, 거주지 및 수당증서의 기호와 번호를 기재한 신고서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증명서(신청일 전 1개월 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 수당을 신청한 시 또는 도도부현에 제출하십시오.
정당한 이유 없이 5월 1일부터 동월 31일 사이에 현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게 되므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신청한 시 또는 도도부현으로 문의하십시오.
- ※ 다음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5월 31일이 속하는 해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건강관리수당의 신청
 - 성명 변경에 대한 신고
 - 거주지 변경에 대한 신고
 - 일본 국내로의 거주지 변경 신고
 - 일본 국외로의 거주지 변경 신고

(4) 건강관리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신청 서류】

- ① 건강관리수당인정신청서(1부) 및 그 사본(1부)
- ② 의사의 진단서(건강관리수당용)(1부) 및 그 사본(1부)
- ③ 피폭자건강수첩(원본) 및 그 수첩의 성명, 거주지 등이 기재된 해당 페이지 사본(2부)
- ④ 계좌송금의뢰서(1부) 및 그 사본(1부)
※ 계좌송금의뢰서는 영어(활자체)로 기재하십시오.
- ⑤ 신청자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원본) 및 그 사본(2부)
또는 예금계좌증명서(1부) 및 그 사본(1부)

【신청 서류 입수방법】

각종 신청 서류는 별첨 2의 양식을 사용하거나 거주 지역에 설치된 영사관 등 또는 그 영사관 등의 홈페이지, 일본후생노동성 홈페이지(주소: <http://www.mhlw.go.jp/bunya/kenkou/genbaku.html>) 등에서 입수하십시오.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

- ⑥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발행한, 유효기간 내의 사진이 붙은 신분증명서나 기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원본) 및 그 사본(2부)

예)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노동허가증, 영주권증 등

또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증명서(1부) 및 그 사본(1부)

예) 호적등본·초본, 공증인이 작성한 증명서, 재류허가증, 거주증명서 등

- ⑦ 신분증명서 등으로 현주소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및 그 사본(1부)

예) 공공요금 청구서(또는 영수증), 본인 앞으로 배달된 우편물, 거주증명서 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기 ①~⑤와 ⑦의 서류 외에 추가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a)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는 신청자 본인의 진술서(1부) 및 그 사본(1부)
 - (b)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하는 위임장(1부) 및 그 사본(1부)
 - (c) 대리인에 대한 상기 ⑥의 서류
 - (d) 신청자 본인에 대하여,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증명서(1부) 및 그 사본(1부)
- ※ (a) 및 (b)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하십시오.

3. 보건수당

(1) 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 분과 수당액

보건수당에는 다음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 ① 피폭자로서, 원자폭탄 투하시 폭심지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서 직접 피폭한 분과 당시 그분의 태아였던 분
월 17,000 엔(2005년 4월 현재)
 - ② 다음 1항에 해당하시는 분
 - (가) 원자폭탄 상해작용의 영향으로 인한 신체상 장애(별첨 2(10페이지). 원자폭탄 상해작용의 영향으로 인한 장애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를 제외함)가 있는 분
 - (나) 70세 이상으로 배우자(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이하 '배우자 등'이라고 함), 자녀 및 손자(녀)가 아무도 없이 혼자 사시는 분
월 33,900 엔(2005년 4월 현재)
- ※ ①, ② 모두 건강관리수당, 의료특별수당, 특별수당 및 원자폭탄소두증수당과 병행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수당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절차·신고 등

- ① 월 17,000 엔의 수당(상기 (1)의 ①)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별첨 2(1~2페이지))에 폭심지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서 직접 피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등(후기 (3) 참조)을 첨부하여 거주 지역에 설치된 영사관 등에 직접 신청하십시오.
※ 이미 이 수당을 지급 받고 계신 분은 중복해서 이 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② 월 33,900 엔의 수당(상기 (1)의 ②)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별첨 2(1~2페이지))에 다음 서류 등(후기 (3) 참조)을 첨부하여 거주 지역에 설치된 영사관 등에 직접 신청하십시오.
※ 이미 이 수당을 지급 받고 계신 분은 중복해서 이 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폭심지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서 직접 피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신체상 장애가 있는 분(상기 (1)의 ②의 (가)에 해당되는 분)의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
 - 70세 이상으로 배우자 등, 자녀 및 손자(녀)가 아무도 없이 혼자 사시는 분(상기 (1)의 ②의 (나)에 해당되는 분)의 경우는 호적등본 등 그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증명서
- ③ 의사의 진단서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 진단서 양식(별첨 2(9~10페이지))의 기입상의 주의사항에 따라서 기입한 것을 제출하십시오.

- ④ 이미 월 17,000 엔의 수당(상기 (1)의 ①)을 지급 받고 계신 분이 월 33,900 엔의 수당(상기 (1)의 ②) 지급요건에 해당되었을 때는, 보건수당액개정신청서(별첨 2(1~2 페이지))에 보건수당증서 및 필요한 서류(후기 (3) 참조)를 첨부하여 거주 지역에 설치된 영사관 등에 직접 신청하십시오.
- ⑤ 신청 서류를 거주 지역에 설치된 영사관 등에 제출하시면, 본인 확인과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영사관 등에서 히로시마시, 나가사키시 또는 도도부현으로 서류가 송부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 본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나 확인 절차는 아주 중요하므로, 정확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 ⑥ 심사 결과 수당 지급이 인정되면 신청자 본인에게 보건수당증서가 송부됩니다.
또, 심사 결과 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취지가 신청자 본인에게 통지됩니다.
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는 수 개월이 걸립니다.

<성명이나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⑦ 피폭자건강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변경된 사실이나 일본 국외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당신청서와 함께 변경 신고서(별첨 2(16~17 페이지))를 제출하십시오.

<보건수당의 지급기간>

- ⑧ 수당 지급이 인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만, 지급요건이 해소되거나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그 날이 속한 달까지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보건수당의 지급요건이 해소되었을 경우의 신고(중요)>

- ⑨ 수당을 지급 받던 분이 사망했을 때나 월 33,900 엔의 수당(상기 (1)의 ②) 지급요건이 해소되었을 때는 수당을 신청한 시 또는 도도부현으로 연락하여 필요한 신고를 하십시오.

수당을 지급 받던 분이 사망한 날 또는 수당 지급요건이 해소된 날이 속한 달의 익월 이후에도 수당을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당을 지급 받다가 사망하신 분의 장례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신고서가 필요하므로(22 페이지(4)의 ⑤ 참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분의 현황 신고(중요)>

⑩ 매년 5월 1일부터 동월 31일 사이에 성명, 거주지 및 수당증서 기호와 번호를 기재한 신고서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증명서(신청일 전 1개월 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 수당을 신청한 시 또는 도도부현에 제출하십시오.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신청한 시 또는 도도부현으로 문의하십시오.

※ 다음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5월 31일이 속하는 해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보건수당의 신청
- 월 33,900 엔의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분의 현황 신고
- 월 33,900 엔의 수당 지급요건이 해소되었을 경우의 신고
- 성명 변경에 대한 신고
- 거주지 변경에 대한 신고
- 일본 국내로의 거주지 변경 신고
- 일본 국외로의 거주지 변경 신고

⑪ 월 33,900 엔의 수당(상기 (1)의 ②)을 지급 받고 있는 분은 매년 5월 1일부터 동월 31일 사이에 성명,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 수당증서의 기호번호 및 상기 (1)의 ②의 (가) 또는 (나) 중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를 기재한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수당을 신청한 시 또는 도도부현에 제출하십시오.

보건수당증서에 ‘신체상 장애가 고정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분은 이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체상 장애가 있는 분(상기 (1)의 ②의 (가)에 해당되는 분)의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상기 ③ 참조)
- 70세 이상으로 배우자 등, 자녀 및 손자(녀)가 아무도 없이 혼자 사는 분(상기 (1)의 ②의 (나)에 해당되는 분)의 경우는 호적등본 등 그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증명서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신청한 시 또는 도도부현으로 문의하십시오.

정당한 이유 없이 ⑩, ⑪의 현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게 되므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보건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신청 서류】

<월 17,000 엔의 수당을 신청할 경우>

- ① 보건수당인정신청서(1부) 및 그 사본(1부)
- ② 폭심지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서 피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1부) 및 그 사본(1부)
※ 피폭자건강수첩의 ‘피폭 장소’ 난에 폭심지로부터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사본(2부)을 첨부하십시오.
- ③ 피폭자건강수첩(원본) 및 그 수첩의 성명, 거주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페이지 사본(2부)
- ④ 계좌송금의뢰서(1부) 및 그 사본(1부)
※ 계좌송금의뢰서는 영어(활자체)로 기재하십시오.
- ⑤ 신청자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원본) 및 그 사본(2부)
또는 예금계좌증명서(1부) 및 그 사본(1부)

<월 33,900 엔의 수당을 신청할 경우>

상기 ①~⑤의 서류 외에 추가로,

(원자폭탄 상해작용의 영향으로 인한 신체상 장애가 있는 분)

- ⑥ 의사의 진단서(보건수당용)(1부) 및 그 사본(1부)
※ 수당을 신청할 때는 별첨 1의 의료기관 목록에 기재된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을 것을 권합니다.
이 목록에 없는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조사표(별첨 2(19~20 페이지))를 진단 받는 의료기관에 지참해서 필요한 사항을 기입해 달라고 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70세 이상으로 배우자 등, 자녀 및 손자(녀)가 아무도 없이 혼자 사는 분)

- ⑦ 배우자 등, 자녀 및 손자(녀)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대한 공공기관의 증명서(호적등본 등)(1부) 및 그 사본(1부)
- ⑧ 동거인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증명서(주민표 등)(1부) 및 그 사본(1부)

<이미 월 17,000 엔의 수당을 받고 있는 분이 월 33,900 엔의 수당을 신청할 경우>

- ⑨ 보건수당액개정신청서(1부) 및 그 사본(1부)
- ⑩ 보건수당증서 원본
상기 ⑨ 및 ⑩의 서류 외에 추가로,
 - 신체상 장애가 있는 분은 상기 ⑥의 서류
 - 배우자 등, 자녀 및 손자(녀)가 아무도 없이 혼자 사는 분은 ⑦ 및 ⑧의 서류

【신청 서류 입수방법】

각종 신청 서류는 별첨 2의 양식을 사용하거나 거주 지역에 설치된 영사관 등 또는 그 영사관 등의 홈페이지, 일본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주소: <http://www.mhlw.go.jp/bunya/kenkou/genbaku.html>) 등에서 입수하십시오.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

- ⑪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발행한, 유효기간 내의 사진이 붙은 신분증명서나 기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원본) 및 그 사본(2부)

예)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노동허가증, 영주권증 등

또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증명서(1부) 및 그 사본(1부)

예) 호적등본·초본, 공증인이 작성한 증명서, 재류허가증, 거주증명서 등

- ⑫ 신분증명서 등으로 현주소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및 그 사본(1부)

예) 공공요금의 청구서(또는 영수증), 본인 앞으로 배달된 우편물, 거주증명서 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기 ①~⑩, ⑫의 서류 외에 추가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a)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는 신청자 본인의 진술서(1부) 및 그 사본(1부)
- (b)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하는 위임장(1부) 및 그 사본(1부)
- (c) 대리인에 대한 상기 ⑪의 서류
- (d) 신청자 본인에 대하여,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증명서(1부) 및 그 사본(1부)

※ (a) 및 (b)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하십시오.

4. 의료특별수당

(1) 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 분

의료특별수당은 원자폭탄의 상해작용으로 인해 실제로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부상 상태에 있다고 일본후생노동대신의 인정을 받은 피폭자로, 현재 인정을 받은 질병이나 부상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분에게 지급됩니다.

※ 건강관리수당, 보건수당 및 특별수당과 병행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수당액

월 137,840 엔(2005년 4월 현재)

※ 수당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절차·신고 등

①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별첨 2(1~2 페이지))에 일본후생노동대신의 인정을 받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등(후기 (4) 참조)을 첨부하여 거주 지역에 설치된 영사관 등에 직접 신청하십시오.

※ 이미 의료특별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분은 중복해서 의료특별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의사의 진단서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 진단서 양식(별첨 2(11 페이지))의 기입상의 주의사항에 따라서 기입한 것을 제출하십시오.

③ 수당을 신청할 때는 별첨 1의 의료기관 목록에 기재된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을 것을 권합니다.

이 목록에 없는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조사표(별첨 2(19~20 페이지))를 진단 받는 의료기관에 지참해서 필요한 사항을 기입해 달라고 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④ 신청 서류를 거주 지역에 설치된 영사관 등에 제출하시면, 본인 확인과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영사관 등에서 히로시마시, 나가사키시 또는 도도부현으로 서류가 송부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 본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나 확인 절차는 아주 중요하므로, 정확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⑤ 심사 결과 수당 지급이 인정되면 신청자 본인에게 의료특별수당증서가 송부됩니다.

또, 심사 결과 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취지가 신청자 본인에게 통지됩니다.

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는 수 개월이 걸립니다.

<성명이나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⑥ 피폭자건강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변경된 사실이나 일본 국외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당신청서와 함께 변경 신고서(별첨 2(16~17 페이지))를 제출하십시오.

<의료특별수당의 지급기간>

- ⑦ 수당 지급이 인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만, 질병이나 부상이 치유되거나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그 날이 속한 달까지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의료특별수당의 지급요건이 해소되었을 경우의 신고(중요)>

- ⑧ 일본후생노동대신의 인정을 받은 질병이나 부상이 치유되었거나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수당을 신청한 시 또는 도도부현으로 연락하여 필요한 신고를 하십시오.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거나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익월 이후에도 수당을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당을 지급 받다가 사망한 분의 장례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신고서가 필요하므로(22 페이지(4)의 ⑤ 참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⑨ 일본후생노동대신의 인정을 받은 질병이나 부상이 치유된 분은 특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15~17 페이지 참조)

<의료특별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분의 현황 및 건강상태 신고(중요)>

- ⑩ 현황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동월 31일 사이에 성명, 거주지 및 수당증서의 기호와 번호를 기재한 신고서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증명서(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 수당을 신청한 시 또는 도도부현에 제출하십시오.

상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신청한 시 또는 도도부현으로 문의하십시오.

※ 다음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5월 31일이 속하는 해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의료특별수당, 원자폭탄소두증수당의 신청
- 의료특별수당 수급자의 건강상태 신고

- 성명 변경에 대한 신고
- 거주지 변경에 대한 신고
- 일본 국내로의 거주지 변경 신고
- 일본 국외로의 거주지 변경 신고

⑪ 건강상태 신고

신청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그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5월 1일부터 동월 31일 사이에 성명,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 및 수당증서의 기호와 번호, 일본후생노동대신의 인정을 받은 질병이나 부상의 명칭을 기재한 신고서에 진단서(상기 ② 참조)를 첨부하여 수당을 신청한 시 또는 도도부현에 제출하십시오.

상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신청한 시 또는 도도부현으로 문의하십시오.

정당한 이유 없이 ⑩의 현황 신고서나 ⑪의 건강상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정지하게 되므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의료특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신청 서류】

- ① 의료특별수당인정신청서(1부) 및 그 사본(1부)
- ② 의사의 진단서(의료특별수당용)(1부) 및 그 사본(1부)
- ③ 피폭자건강수첩(원본) 및 그 수첩의 성명, 거주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페이지 사본(2부)
- ④ 일본후생노동대신의 인정서(원본) 및 그 사본(2부)
- ⑤ 계좌송금의뢰서(1부) 및 그 사본(1부)
※ 계좌송금의뢰서는 영어(활자체)로 기재하십시오.
- ⑥ 신청자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원본) 및 그 사본(2부)
또는 예금계좌증명서(1부) 및 그 사본(1부)

【신청 서류 입수방법】

각종 신청 서류는 별첨 2의 양식을 사용하거나 거주 지역에 설치된 영사관 등 또는 그 영사관 등의 홈페이지, 일본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주소: <http://www.mhlw.go.jp/bunya/kenkou/genbaku.html>) 등에서 입수하십시오.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

- ⑦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발행한, 유효기간 내의 사진이 붙은 신분증명서나 기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원본) 및 그 사본(2부)
예)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노동허가증, 영주권증 등
또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증명서(1부) 및 그 사본(1부)
예) 호적등본·초본, 공증인이 작성한 증명서, 재류허가증, 거주증명서 등
- ⑧ 신분증명서 등으로 현주소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및 그 사본(1부)
예) 공공요금의 청구서(또는 영수증), 본인 앞으로 배달된 우편물, 거주증명서 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기 ①~⑥, ⑧의 서류 외에 추가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a)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는 신청자 본인의 진술서(1부) 및 그 사본(1부)
- (b)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하는 위임장(1부) 및 그 사본(1부)
- (c) 대리인에 대한 상기 ⑦의 서류
- (d) 신청자 본인에 대하여,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증명서(1부) 및 그 사본(1부)
- ※ (a) 및 (b)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하십시오.

5. 특별수당

(1) 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 분

특별수당은 원자폭탄의 상해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부상 상태에 있다고 일본후생노동대신의 인정을 받은 피폭자로서, 인정을 받은 질병이나 부상이 치유된 분에게 지급됩니다.

※ 건강관리수당, 보건수당 및 의료특별수당과 병행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수당액

월 50,900 엔(2005년 4월 현재)

※ 수당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절차·신고 등

①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별첨 2(1~2 페이지))에 필요한 서류 등(후기 (4) 참조)을 첨부하여 거주 지역에 설치된 영사관 등에 직접 신청하십시오.

※ 이미 특별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분은 중복해서 특별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신청 서류를 거주 지역에 설치된 영사관 등에 제출하시면, 본인 확인과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영사관 등에서 히로시마시, 나가사키시 또는 도도부현으로 서류가 송부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 본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나 확인 절차는 아주 중요하므로, 정확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③ 심사 결과 수당 지급이 인정되면 신청자 본인에게 특별수당증서가 송부됩니다.

또, 심사 결과 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취지가 신청자 본인에게 통지됩니다.

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는 수 개월이 걸립니다.

<성명이나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④ 피폭자건강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변경된 사실이나 일본 국외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당신청서와 함께 변경 신고서(별첨 2(16~17 페이지))를 제출하십시오.

<특별수당의 지급기간>

- ⑤ 수당 지급이 인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만,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그 날이 속한 달까지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특별수당의 지급요건이 해소되었을 경우의 신고(중요)>

- ⑥ 수당을 지급 받던 분이 사망했을 때는 수당을 신청한 시 또는 도도부현으로 연락하여 필요한 신고를 하십시오.

수당을 지급 받던 분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익월 이후에도 수당을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당을 지급 받다가 사망한 분의 장례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신고서가 필요하므로(22 페이지의 ⑤ 참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분의 현황 신고(중요)>

- ⑦ 매년 5월 1일부터 동월 31일 사이에 성명, 거주지 및 수당증서의 기호와 번호를 기재한 신고서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증명서(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 수당을 신청한 시 또는 도도부현에 제출하십시오.

정당한 이유 없이 5월 1일부터 동월 31일 사이에 현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게 되므로,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상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신청한 시 또는 도도부현으로 문의하십시오.

※ 다음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5월 31일이 속하는 해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특별수당, 원자폭탄소두증수당의 신청
- 성명 변경에 대한 신고
- 거주지 변경에 대한 신고
- 일본 국내로의 거주지 변경 신고
- 일본 국외로의 거주지 변경 신고

(4) 특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신청 서류】

- ① 특별수당인정신청서(1부) 및 그 사본(1부)
- ② 피폭자건강수첩(원본) 및 그 수첩의 성명, 거주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페이지 사본(2부)
- ③ 계좌송금의뢰서(1부) 및 그 사본(1부)
※ 계좌송금의뢰서는 영어(활자체)로 기재하십시오.
- ④ 신청자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원본) 및 그 사본(2부)
또는 예금계좌증명서(1부) 및 그 사본(1부)

【신청 서류 입수방법】

각종 신청 서류는 별첨 2의 양식을 사용하거나 거주 지역에 설치된 영사관 등 또는 그 영사관 등의 홈페이지, 일본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주소: <http://www.mhlw.go.jp/bunya/kenkou/genbaku.html>) 등에서 입수하십시오.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

- ⑤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발행한, 유효기간 내의 사진이 붙은 신분증명서나 기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원본) 및 그 사본(2부)
예)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노동허가증, 영주권증 등
또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증명서(1부) 및 그 사본(1부)
예) 호적등본·초본, 공증인이 작성한 증명서, 재류허가증, 거주증명서 등
- ⑥ 신분증명서 등으로 현주소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및 그 사본(1부)
예) 공공요금의 청구서(또는 영수증), 본인 앞으로 배달된 우편물, 거주증명서 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기 ①~④, ⑥의 서류 외에 추가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a)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는 신청자 본인의 진술서(1부) 및 그 사본(1부)
 - (b)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하는 위임장(1부) 및 그 사본(1부)
 - (c) 대리인에 대한 상기 ⑤의 서류
 - (d) 신청자 본인에 대하여,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증명서(1부) 및 그 사본(1부)
- ※ (a) 및 (b)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하십시오.

6. 원자폭탄소두증수당

(1) 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 분

원자폭탄소두증수당은 피폭자로서 원자폭탄 방사능의 영향으로 인한 소두증 환자분에게 지급됩니다.

※ 건강관리수당 및 보건수당과 병행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수당액

월 47,440 엔(2005년 4월 현재)

※ 수당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절차·신고 등

①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별첨 2(1~2 페이지))에 원자폭탄 방사능의 영향으로 인한 소두증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등(후기 (4) 참조)을 첨부하여 거주 지역에 설치된 영사관 등에 직접 신청하십시오.

※ 이미 원자폭탄소두증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분은 중복해서 원자폭탄소두증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의사의 진단서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 진단서 양식(별첨 2(12 페이지))의 기입상의 주의사항에 따라서 기입한 것을 제출하십시오.

③ 수당을 신청할 때는 별첨 1의 의료기관 목록에 게재된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을 것을 권합니다.

이 목록에 없는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조사표(별첨 2(19~20 페이지))를 진단 받는 의료기관에 지참해서 필요한 사항을 기입해 달라고 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④ 신청 서류를 거주 지역에 설치된 영사관 등에 제출하시면, 본인 확인과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영사관 등에서 히로시마시, 나가사키시 또는 도도부현으로 서류가 송부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 본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나 확인 절차는 아주 중요하므로, 정확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⑤ 심사 결과 수당 지급이 인정되면 신청자 본인에게 원자폭탄소두증수당증서가 송부됩니다.

또, 심사 결과 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취지가 신청자 본인에게 통지됩니다.

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는 수 개월이 걸립니다.

<성명이나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⑥ 피폭자건강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변경된 사실이나 일본 국외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당신청서와 함께 변경 신고서(별첨 2(16~17 페이지))를 제출하십시오.

<원자폭탄소두증수당의 지급기간>

- ⑦ 수당 지급이 인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만,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그 날이 속한 달까지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원자폭탄소두증수당의 지급요건이 해소되었을 경우의 신고(중요)>

- ⑧ 수당을 지급 받던 분이 사망했을 때는, 수당을 신청한 시 또는 도도부현으로 연락하여 필요한 신고를 하십시오.

수당을 지급 받던 분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익월 이후에도 수당을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당을 지급 받다가 사망한 분의 장례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신고서가 필요하므로(22 페이지(4)의 ⑤ 참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폭탄소두증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분의 현황 신고(중요)>

- ⑨ 매년 5월 1일부터 동월 31일 사이에 성명, 거주지 및 수당증서의 기호와 번호를 기재한 신고서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증명서(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 수당을 신청한 시 또는 도도부현에 제출하십시오.

정당한 이유 없이 5월 1일부터 동월 31일 사이에 현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게 되므로,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상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신청한 시 또는 도도부현으로 문의하십시오.

※ 다음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5월 31일이 속하는 해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원자폭탄소두증수당, 의료특별수당, 특별수당의 신청
- 성명 변경에 대한 신고
- 거주지 변경에 대한 신고
- 일본 국내로의 거주지 변경 신고
- 일본 국외로의 거주지 변경 신고

(4) 원자폭탄소두증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신청 서류】

- ① 원자폭탄소두증수당신청서(1부) 및 그 사본(1부)
- ② 의사의 진단서(원자폭탄소두증수당용)(1부) 및 그 사본(1부)
- ③ 일본후생노동대신의 인정을 받은 분은 인정서(원본) 및 그 사본(2부)
- ④ 피폭자건강수첩(원본) 및 그 수첩의 성명, 거주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페이지 사본(2부)
- ⑤ 계좌송금의뢰서(1부) 및 그 사본(1부)
 - ※ 계좌송금의뢰서는 영어(활자체)로 기재하십시오.
- ⑥ 신청자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원본) 및 그 사본(2부)
 - 또는 예금계좌증명서(1부) 및 그 사본(1부)

【신청 서류 입수방법】

각종 신청 서류는 별첨 2의 양식을 사용하거나 거주 지역에 설치된 영사관 등 또는 그 영사관 등의 홈페이지, 일본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주소: <http://www.mhlw.go.jp/bunya/kenkou/genbaku.html>) 등에서 입수하십시오.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발행한, 유효기간 내의 사진이 붙은 신분증명서나 기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원본) 및 그 사본(2부)

예)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노동허가증, 영주권증 등

또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증명서(1부) 및 그 사본(1부)

예) 호적등본·초본, 공증인이 작성한 증명서, 재류허가증, 거주증명서 등

- ⑧ 신분증명서 등으로 현주소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및 그 사본(1부)

예) 공공요금의 청구서(또는 영수증), 본인 앞으로 배달된 우편물, 거주증명서 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기 ①~⑥, ⑧의 서류 외에 추가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a)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는 신청자 본인의 진술서(1부) 및 그 사본(1부)
 - (b)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하는 위임장(1부) 및 그 사본(1부)
 - (c) 대리인에 대한 상기 ⑦의 서류
 - (d) 신청자 본인에 대하여,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증명서(1부) 및 그 사본(1부)
- ※ (a) 및 (b)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하십시오.

7. 장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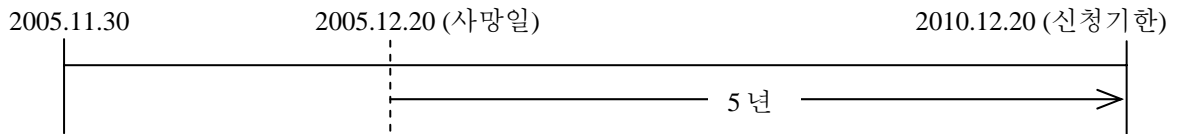
(1) 장례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분

장례비는 피폭자가 사망했을 때 그 장례를 치를(치른) 분에게 지급됩니다.

단, 사망 원인이 원자폭탄 상해작용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장례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사망하신 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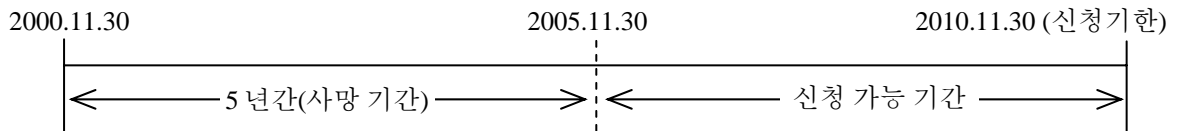
<예>



(2) 2005년 11월 30일 이전에 사망하신 분의 경우

2005년 11월 30일로부터 5년 전인 2000년 11월 30일 이후에 사망한 피폭자의 장례를 치른 분도 장례비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신청 가능한 기간은 2005년 11월 30일로부터 5년 후인 2010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사망 원인이 원자폭탄 상해작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장례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기 (1)과 동일합니다.

(3) 장례비 금액

193,000 엔(2005년 4월 현재)

※ 장례비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00년 11월 30일부터 2005년 3월 31일 사이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분이 사망한 연도의 장례비 금액이 지급됩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179,000 엔	179,000 엔	189,000 엔	189,000 엔	193,000 엔

연도란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01년 4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를 2001년도라고 합니다.

(4) 장례비를 지급 받기 위한 절차·신고 등

- ① 장례비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별첨 2(5 페이지))에 사망 및 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후기 (5) 참조)을 첨부하여 거주 지역에 설치된 영사관 등에 제출하십시오.
※ 이미 장례비를 지급 받은 분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피폭자에 대해 중복해서 장례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분이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 피폭자의 피폭자건강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히로시마 시장, 나가사키 시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② 장례를 치를(치른) 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매·화장허가증, 조문 답례장, 장의사의 영수증 등으로 장례를 치를(치른) 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 ③ 신청 서류를 거주 지역에 설치된 영사관 등에 제출하시면, 본인 확인과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영사관 등에서 히로시마시, 나가사키시 또는 도도부현으로 서류가 송부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 본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나 확인 절차는 아주 중요하므로, 정확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 ④ 심사 결과 지급이 결정되면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또, 심사 결과 장례비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취지가 신청자 본인에게 통지됩니다.
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는 수 개월이 걸립니다.

<사망신고(중요)>

- ⑤ 수당을 지급 받던 분이 사망하여 장례비를 신청할 때는, 동시에 거주 지역에 설치된 영사관 등에 사망신고서(별첨 2(18 페이지))를 제출하십시오.

(5) 장례비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신청 서류】

- ① 장례비지급신청서(1부) 및 그 사본(1부)
 - ※ 피폭자건강수첩이 없을 경우에는 수첩 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수첩을 교부 받은 도도부현이나 시의 명칭은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② 사망 및 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및 그 사본(1부)
 - 예)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증명서 등
 - ※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된 것을 제출하십시오.
- ③ 장례를 치를(치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및 그 사본(1부)
 - 예) 매·화장허가증, 조문 답례장, 장의사 영수증 등
 - ※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된 것을 제출하십시오.
또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된 것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거주 국가의 언어로 기재된 것과 이를 일본어로 번역한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 ④ 피폭자건강수첩 원본
 - ※ 피폭자건강수첩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⑤ 사망신고서(1부)
- ⑥ 계좌송금의뢰서(1부) 및 그 사본(1부)
 - ※ 계좌송금의뢰서는 영어(활자체)로 기재하십시오.
- ⑦ 신청자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원본) 및 그 사본(2부)
또는 예금계좌증명서(1부) 및 그 사본(1부)

【신청 서류 입수방법】

각종 신청 서류는 별첨 2의 양식을 사용하거나 거주 지역에 설치된 영사관 등 또는 그 영사관 등의 홈페이지, 일본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주소: <http://www.mhlw.go.jp/bunya/kenkou/genbaku.html>) 등에서 입수하십시오.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

- ⑧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발행한, 유효기한 내의 사진이 붙은 신분증명서나 기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원본) 및 그 사본(2부)
 - 예)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노동허가증, 영주권증 등
 - 또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증명서(원본) 및 그 사본(1부)
 - 예) 호적등본·초본, 공증인이 작성한 증명서, 재류허가증, 거주증명서 등
- ⑨ 신분증명서 등으로 현주소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및 그 사본(1부)
 - 예) 공공요금의 청구서(또는 영수증), 본인 앞으로 배달된 우편물, 거주증명서 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기 ①~⑦, ⑨의 서류 외에 추가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a)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는 신청자 본인의 진술서(1부) 및 그 사본(1부)
 - (b)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하는 위임장(1부) 및 그 사본(1부)
 - (c) 대리인에 대한 상기 ⑧의 서류
 - (d) 신청자 본인에 대하여,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증명서(1부) 및 그 사본(1부)
- ※ (a) 및 (b)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하십시오.

8.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분에 관한 신고 등

(1) 현황 신고(중요)

매년 5월 1일부터 동월 31일 사이에 성명, 거주지 및 수당증서의 기호와 번호를 기재한 신고서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증명서(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 수당을 신청한 히로시마시, 나가사키시 또는 도도부현에 제출하십시오.

정당한 이유 없이 5월 1일부터 동월 31일 사이에 현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게 되므로,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상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신청한 시 또는 도도부현으로 문의하십시오.

※ 다음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5월 31일이 속하는 해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각종 수당의 신청
- 월 33,900 엔의 보건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분의 현황 신고
- 월 33,900 엔의 수당 지급요건이 해소되었을 경우의 신고
- 의료특별수당 수급자의 건강상태 신고
- 하기 (3)의 ①~③의 신고
- 일본 국외로의 거주지 변경 신고

(2) 사망신고

수당을 지급 받던 분이 사망했을 때는 수당을 신청한 시 또는 도도부현으로 연락하고 14일 이내에 신고하십시오.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익월 이후에도 수당을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성명, 거주지 변경에 대한 신고

① 성명 변경 신고

피폭자건강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당을 신청한 시 또는 도도부현으로 연락하고 14일 이내에 신고하십시오.

② 거주지 변경 신고

일본 국외에서 거주지를 옮길 때는 사전에 수당을 신청한 시 또는 도도부현으로 연락하십시오.

③ 일본 국내로의 거주지 변경 신고

일본 국내에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가지게 되었을 때는 변경 거주지 또는 현재지의 도도부현(히로시마시 또는 나가사키시의 경우는 시)으로 연락하고 14 일 이내에 신고하십시오.

(4) 수첩의 재교부

피폭자건강수첩을 파손하거나 오염시키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히로시마 시장, 나가사키 시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수첩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수첩을 발행한 히로시마시, 나가사키시 또는 도도부현으로 문의하십시오.

(5) 히로시마시, 나가사키시 및 각 도도부현의 문의처 일람

2005년 11월 1일 현재

도도부현·시 都道府県·市	우편번호	소재지	담당부(국)	담당과	전화			
					대표	내선	직통	FAX
히로시마 広島	730-8511	히로시마시 나카구 모토마치 10-52 広島市中区基町 10-52	복지보건부 福祉保健部	원폭피해자원호실 原爆被害者支援室	082-228-2111	3115	082-513-3115	082-228-3277
나가사키 長崎	850-8570	나가사키시 에도마치 2-13 長崎市江戸町 2-13	복지보건부 福祉保健部	원폭피해자대책과 原爆被害者対策課	095-824-1111	2475	095-895-2475	095-895-2578
히로시마시 広島市	730-8586	히로시마시 나카구 코쿠타이지마치 1 초메 6-34 広島市中区国泰寺一丁目 6-34	원폭피해대책부 原爆被害対策本部	원호계 援護係	-	-	082-504-2194	082-504-2257
나가사키시 長崎市	850-8685	나가사키시 사쿠라마치 2-22 長崎市桜町 2-22	원폭피해대책부 原爆被害対策本部	원호과 援護課	095-825-5151	2721	095-829-1149	095-829-1148
홋카이도 北海道	060-8588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 3 조 니시 6 초메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三条西 6 丁目	보건복지부 保健福祉部	질병대책과 疾病対策課	011-231-4111	25-419	011-204-5254	011-232-8216
아오모리 青森	030-8570	아오모리현 아오모리시 나가시마 1-1-1 青森県青森市長島 1-1-1	건강복지부 健康福祉部	보건위생과 保健衛生課	017-722-1111	6267	017-734-9284	017-734-8047
이와테 岩手	020-8570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우치마루 10-1 岩手県盛岡市内丸 10-1	보건복지부 保健福祉部	보건위생과 保健衛生課	019-651-3111	5466	019-629-5466	019-629-5474
미야기 宮城	980-8570	센다이시 아오바구 혼초 3 초메 8-1 仙台市青葉区本町三丁目 8-1	보건복지부 保健福祉部	건강대책과 健康対策課	022-211-2111	2634	022-211-2634	022-211-2697
아키타 秋田	010-8570	아키타시 산노 4 초메 1-1 秋田市山王四丁目 1-1	건강복지부 健康福祉部	건강대책과 健康対策課	018-860-1111	1424	018-860-1425	018-860-3821
야마가타 山形	990-8570	야마가타시 마쓰나미 2 초메 8-1 山形市松波二丁目 8-1	건강복지부 健康福祉部	보건약무과 保健薬務課	023-630-2211	2662	023-630-2662	023-632-8176
후쿠시마 福島	960-8670	후쿠시마시 스기쓰마초 2-16 福島市杉妻町 2-16	보건복지부 保健福祉部	건강위생영역건강증진그 룹 健康衛生領域健康増進 グループ	024-521-1111	2759	024-521-7236	024-521-2191
이바라키 茨城	310-8555	미토시 가사하라초 978-6 水戸市笠原町 978-6	보건복지부 保健福祉部	보건예방과 保健予防課	029-301-1111	3220	029-301-3220	029-301-6341
도치기 栃木	320-8501	우쓰노미야시 하나와다 1 초메 1- 20 宇都宮市壺田一丁目 1-20	보건복지부 保健福祉部	건강증진과 健康増進課	028-623-2323	3086	028-623-3086	028-623-3920
군마 群馬	371-8570	마에바시시 오테마치 1 초메 1-1 前橋市大手町一丁目 1-1	보건복지식품국 保健福祉食品局	보건예방과 保健予防課	027-223-1111	2609	027-226-2609	027-223-7950
사이타마 埼玉	330-9301	사이타마시 우라와구 다카사고 3 초메 15-1 さいたま市浦和区高砂三丁目 15-1	보건의료부 保健医療部	건강활동지원과 健康づくり支援課	048-824-2111	3583	048-830-3583	048-830-4804
지바 千葉	260-8667	지바시 주오구 이치바초 1-1 千葉市中央区市場町 1-1	건강복지부 健康福祉部	건강복지지도과 健康福祉指導課	없음	-	043-223-2349	043-222-6294
도쿄 東京	163-8001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2 초메 8 번 1 호 新宿区西新宿二丁目 8 番 1 号	복지보건국 福祉保健局	질병대책과 疾病対策課	03-5321-1111	32-931	03-5320-4473	03-5388-1437
가나가와 神奈川	231-8588	요코하마시 나카구 니혼오도리 1 横浜市中区日本大通 1	보건복지부 保健福祉部	생활원호과 生活支援課	045-210-1111	4906	없음	045-210-8859
니가타 新潟	950-8570	니가타시 신키초 4-1 新潟市新光町 4-1	복지보건부 福祉保健部	건강대책과 健康対策課	025-285-5511	2653	025-280-5378	025-285-8757
도야마 富山	930-8501	도야마시 신소가와 1-7 富山市新総曲輪 1-7	후생부 厚生部	건강과 健康課	076-431-4111	3556	076-444-3225	076-444-3496
이시카와 石川	920-8580	가나자와시 구라쓰키 1 초메 1 金沢市鞍月一丁目 1	건강복지부 健康福祉部	건강추진과 健康推進課	076-225-1111	4137	076-225-1438	076-225-1444
후쿠이 福井	910-8580	후쿠이시 오테 3 초메 17-1 福井市大手三丁目 17-1	건강복지부 健康福祉部	지역복지과 地域福祉課	0776-21-1111	2518	0776-20-0328	0776-20-0637
야마나시 山梨	400-8501	고후시 마루노우치 1 초메 6-1 甲府市丸之内一丁目 6-1	복지보건부 福祉保健部	건강증진과 健康増進課	055-237-1111	3522	055-223-1497	055-223-1499
나가노 長野	380-8570	나가노시 미나미나가노 하바시타 692-2 長野市大字南長野字幅下 692-2	위생부 衛生部	보건예방과 保健予防課	026-232-0111	2641	026-235-7148	026-235-7170
기후 岐阜	500-8570	기후시 야부타미나미 2-1-1 岐阜市藪田南 2-1-1	건강복지환경부 健康福祉環境部	보건의료과 保健医療課	058-272-1111	2545	없음	058-277-0157
시즈오카 静岡	420-8601	시즈오카시 오테마치 9-6 静岡市追手町 9-6	건강복지부 健康福祉部	질병대책실 疾病対策室	없음	-	054-221-3393	054-221-3291
아이치 愛知	460-8501	나고야시 나카구 산노마루 3 초메 1-2 名古屋市中区三之丸三丁目 1-2	건강복지부 健康福祉部	건강대책과 健康対策課	052-961-2111	3153	052-954-6270	052-954-6917
미에 三重	514-8570	쓰시 코메이초 13 津市広明町 13	건강복지부 健康福祉部	의료정책실 医療政策室	059-224-3070	-	059-224-2337	059-224-2340

도도부현·시 都道府県・市	우편번호	소재지	담당부(국)	담당과	전화			
					대표	내선	직통	FAX
시가 滋賀	520-8577	오쓰시 교마치 4 초메 1-1 大津市京町四丁目 1-1	건강복지부 健康福祉部	건강증진과 健康推進課	077-524-1121	3619	077-528-3619	077-528-4857
교토 京都	602-8570	교토시 가미교쿠 시모다치우리도리 신마치니시이루 야부노우치초 京都市上京区下立売通新町西入藪 ノ内町	보건복지부 保健福祉部	건강대책과 健康対策課	075-451-8111	4737	075-414-4736	075-431-3970
오사카 大阪	540-8570	오사카시 주오구 오테마에 2 초메 1-22 大阪市中央区大手前二丁目 1-22	건강복지부 健康福祉部	의료대책과 医療対策課	06-6941-0351	2534	06-6942-0401	06-6944-6691
효고 兵庫	650-8567	고베시 주오구 시모야마테도리 5 초메 -10-1 神戸市中央区下山手通五丁目-10-1	건강생활부 健康生活部	질병대책과 疾病対策課	078-341-7711	3231	078-362-3245	078-362-9474
나라 奈良	630-8501	나라현 나라시 노보리오지초 30 奈良県奈良市登大路町 30	복지부 건강안전국 福祉部健康安全局	건강증진과 健康増進課	0742-22-1101	3139	0742-27-8660	0742-27-8262
와카야마 和歌山	640-8585	와카야마시 고마쓰바라도리 1 초메 1 和歌山市小松原通一丁目 1	복지보건부 福祉保健部	건강대책과 健康対策課	073-432-4111	2653	073-441-2643	073-428-2325
돗토리 鳥取	680-8570	돗토리현 돗토리시 히가시마치 1 초메 220 鳥取県鳥取市町一丁目 220	복지보건부 福祉保健部	복지보건과 福祉保健課	0857-26-7111	7146	0857-26-7146	0857-26-8116
시마네 島根	690-8501	마쓰에시 도노마치 1 번지 松江市殿町 1 番地	건강복지부 健康福祉部	건강증진과 健康推進課	0852-22-5111	5329	0852-22-5329	0852-22-6328
오카야마 岡山	700-8570	오카야마시 우치산게 2 초메 4-6 岡山市内山下二丁目 4-6	보건복지부 保健福祉部	의약안전과 医療安全課	086-224-2111	2729	086-226-7342	086-224-2133
야마구치 山口	753-8501	야마구치시 다키마치 1-1 山口市滝町 1-1	건강복지부 健康福祉部	의무과 医療課	083-922-3111	2924	083-933-2924	083-933-2939
도쿠시마 徳島	770-8570	도쿠시마시 반다이초 1-1 徳島市万代町 1-1	보건복지부 保健福祉部	건강증진과 健康増進課	088-621-2500	2224	088-621-2224	088-621-2841
가가와 香川	760-8570	다카마쓰시 반초 4 초메 1-10 高松市番町四丁目 1-10	건강복지부 健康福祉部	건강복지총무과 健康福祉総務課	087-831-1111	3127	087-832-3272	087-861-2193
에히메 愛媛	790-8570	마쓰야마시 이치반초 4 초메 4-2 松山市一番町四丁目 4-2	보건복지부 保健福祉部	건강증진과 健康増進課	089-941-2111	3649	089-912-2404	089-921-5609
고치 高知	780-8570	고치시 마루노우치 1 초메 2-20 高知市丸之内一丁目 2-20	건강복지부 健康福祉部	건강대책과 健康対策課	088-823-1111	2435	088-823-9678	088-873-9941
후쿠오카 福岡	812-8577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히가시고엔 7-7 福岡市博多区東公園 7-7	보건복지부 保健福祉部	건강대책과 健康対策課	092-651-1111	3133	092-643-3270	092-643-3271
사가 佐賀	840-8570	사가시 조나이 1 초메 1-59 佐賀市城内一丁目 1-59	건강복지본부 健康福祉本部	건강증진과 健康増進課	0952-24-2111	1838	0952-25-7075	0952-25-7268
구마모토 熊本	862-8570	구마모토시 스이젠지 6 초메 18-1 熊本市水前寺六丁目 18-1	건강복지부 健康福祉部	건강활동추진과 健康づくり推進課	096-383-1111	7076	096-333-2210	096-383-0498
오이타 大分	870-8501	오이타시 오테마치 3 초메 1-1 大分市大手町三丁目 1-1	복지보건부 福祉保健部	건강대책과 健康対策課	097-536-1111	2671	없음	097-534-9131
미야자키 宮崎	880-8501	미야자키시 다치바나도리히가시 2 초메 10-1 宮崎市橘通東二丁目 10-1	복지보건부 福祉保健部	건강증진과 健康増進課	0985-24-1111	2498	0985-26-7079	0985-26-7336
가고시마 鹿児島	890-8577	가고시마시 가모이케신마치 10-1 鹿児島市鴨池新町 10-1	보건복지부 保健福祉部	건강증진과 健康増進課	099-286-2111	2715	099-286-2714	099-286-5556
오키나와 沖縄	900-8570	나하시 이즈미자키 1 초메 2-2 那覇市泉崎一丁目 2-2	복지보건부 福祉保健部	건강증진과 健康増進課	098-866-2333	2209	098-866-2209	098-866-2289